



RICON

건설 BRIEF

건 설 브 리 프

산업동향

- 건설사업 정보 디지털화를 위한 미국 보조금 제도 사례와 시사점
 - 미국 연방고속도로국(FHWA)의 보조금 프로그램 활용 사례

정책동향

-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전문건설업체 보호 구간(4.3억원) 3년간 유예

시장동향

- 건설기업 부실 우려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현황 점검
 - 하도급업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

산업동향

건설사업 정보 디지털화를 위한 미국 보조금 제도 사례와 시사점

- 미국 연방고속도로국(FHWA)의 보조금 프로그램 활용 사례 -

이호일 선임연구원
(lhi0904@ricon.re.kr)

1. 국내 공공 건설사업 정보 디지털화에 대한 추진 동향

◆ 「제6차 건설공사 지원통합정보체계 기본계획」을 통한 국내 공공 건설공사의 디지털화 촉진

- 2023.7.5. 국토교통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의 정책 로드맵을 통한 공공 건설공사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자 「제6차 건설공사 지원통합정보체계 기본계획」(이하 6차 기본계획)을 발표함
- 그간 건설사업 정보화가 공공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공공 보유 정보를 민간에 개방하고, 건설현장에 행정 자동화를 고도화하기 위한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음
- 이에 따라 2030년까지 모든 건설사업 정보의 디지털화를 위해 ① 건설CALS(공공 건설생애주기 정보화 시스템)의 보유정보 개방 확대(59%→75%) ② 종이작업(Paperless) 없는 건설행정 정착 ③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셋 공개(0%→20%)를 목표로 설정함
- 6차 기본계획의 성과로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 및 BIM(건설정보모델링, Buliding Information Modeling) 활용을 통해 공종별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고, 행정 디지털화를 통해 건설 행정업무 간소화를 추진하며, 관리체계 개편 및 확산을 통해 디지털 공사관리 지원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함
- 현재 우리나라의 BIM 활용도는 대부분 건설사업에서 설계 단계에 국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주도로 BIM 확산을 위한 건설산업 디지털화에 힘쓰고 있음
- 또한, BIM 확산을 통한 국내 건설산업 디지털화 정착을 위해 현재 양평-이천 고속도로 건설현장(총사업비: 9,674억 원, 공사기간: 2019.09-2026.12)에 시공과정에서의 BIM 도입 및 공장기성관리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 정부 내에 BIM을 현장 전면에 도입하여 건설산업 전반을 디지털화하고자 함

2. 미국 연방정부의 인프라투자 동향

◆ 미국 인프라투자법 제정 및 투자계획

- 「미국 인프라투자법(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이하 IIJA)」은 2021년 11월 15일,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법안으로 통과되었으며, 2026년 11월까지 5년간 적용될 예정임

- 해당 법안은 미국 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에 의해 교통 및 인프라 지출에 총 1조 2천억 달러(GDP의 6.0%)가 승인되어 그 중 6,500억 달러는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기존 사업 예산으로, 나머지 5,500억 달러는 “신규 투자 및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임
- 대부분의 예산은 연방 보조금 형태로 주 정부 및 지방정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집행되며, 보조금 지급 방식은 인구 등의 기준에 따라 주 정부별로 예산이 배정되고 이후 지원할 프로젝트가 결정되는 방식인 “포물러 보조금 방식”과 주 정부가 신청한 프로젝트를 연방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연방부처가 심사한 후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쟁 보조금 방식”으로 구분됨
- 또한, 신규 투자에 대한 예산 총 5,500억 달러 중 1,200억 달러는 경쟁 보조금으로 책정되어 연방 부처가 직접 프로젝트를 선정하며, 나머지 3,300억 달러는 각 주에 일괄 교부되어 주 정부가 지원사업 선별, 사업자 선정, 프로젝트 관리 등 일체를 담당할 예정임
- 특히, 총예산에서 도로 및 교량과 기타 주요 지상 교통사업에 1,100억 달러가 분배될 예정이며, 이 중 2013년부터 시행된 미국 연방고속도로국(FHWA)의 「기술 및 혁신배포 프로그램(Technology and Innovation Deployment Program, 이하 TIDP)」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2천만 달러가 지급될 예정임
- 연방고속도로국(FHWA)의 「선진 디지털 건설관리시스템 프로그램(Advanced Digital Construction Management Systems, 이하 ADCMS)」은 「기술 및 혁신배포 프로그램(TIDP)」 자금 총 1억 달러로부터 2026년까지 5년에 걸쳐 지원받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400만 달러를 지급하였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1,700만 달러가 지급될 예정임
- ADMCS 지원의 주요 목적은 기술 교류, 모범사례 개발 및 배치 등을 통해 ADCMS 활동의 전개 및 이행을 가속화하는 것임

구 분	교 통							상하수도	광대역 인터넷	에너지 전력	환경	수자원	재난 대비
	도로 교량	대중 교통	철도	교통 안전	공항 항만 수로	전기차	지역 연결						
신규투자 예산 (억 달러)	1,100	390	660	110	420	150	10	550	650	730	210	83	460

자료: 미국 인프라투자법(IJA, 2021)

3. 보조금 제도를 활용한 미국의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사례

◆ 미국 연방정부의 보조금 제도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미국 연방고속도로국)

- 2023년 11월 16일, 미국 연방고속도로국(FHWA)은 연방정부의 「선진 디지털 건설관리시스템 프로그램(ADCMS)」 보조금에 대해 10개 주를 대상으로 3,400만 달러를 지급함

- 해당 프로그램은 초당적 인프라투자법(IJA)의 일환인 동시에 미국 연방고속도로국(FHWA)의 기술 및 혁신 배포 프로그램(TIDP)의 한 측면임
- 또한, 보조금 지급은 주 정부별 예산이 배정된 후 지원할 프로젝트가 결정되는 포물러 보조금 지급방식으로 진행되며, 각 주 정부에 배정된 보조금 금액은 주 정부 소속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이하 DOT)를 통해 민간건설회사의 프로젝트별로 지급될 예정임
- 선정된 각 10개주의 프로젝트들은 다른 주 및 지방 교통기관의 모범사례로 채택하고, 국가 차원의 디지털 건설기술 채택 및 정착을 위한 모델 개발에 활용될 예정임

구 분	프로젝트 설명	보조금 금액
Utah DOT	현장의 디지털 데이터 수집 도구 개선 및 확산	\$5,000,000
Illinois DOT	건설 작업을 위한 디지털 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	\$4,500,000
Connecticut DOT	기존 클라우드 기반 프로젝트 및 문서 관리 시스템 개선	\$4,497,696
Delaware DOT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 자동화	\$4,000,000
California DOT	프로젝트 발주 주기 전반에 대한 데이터 운영 개선	\$3,920,800
Pennsylvania DOT	디지털 방식의 정보 공유를 위한 오픈 데이터 기준 개발	\$3,910,000
Oklahoma DOT	디지털 프로젝트 발주 계획 개발 및 수행	\$3,079,440
Minnesota DOT	건설 주기 전반에 걸친 자산 및 디지털 데이터 관리 시스템 개선	\$2,160,000
Iowa DOT	디지털 건설 표준 및 프로세스 개선	\$1,501,200
Washington DOT	교차로, 도로표지판 등 교통 통제 정보 수집을 위한 프로세스 자동화	\$1,35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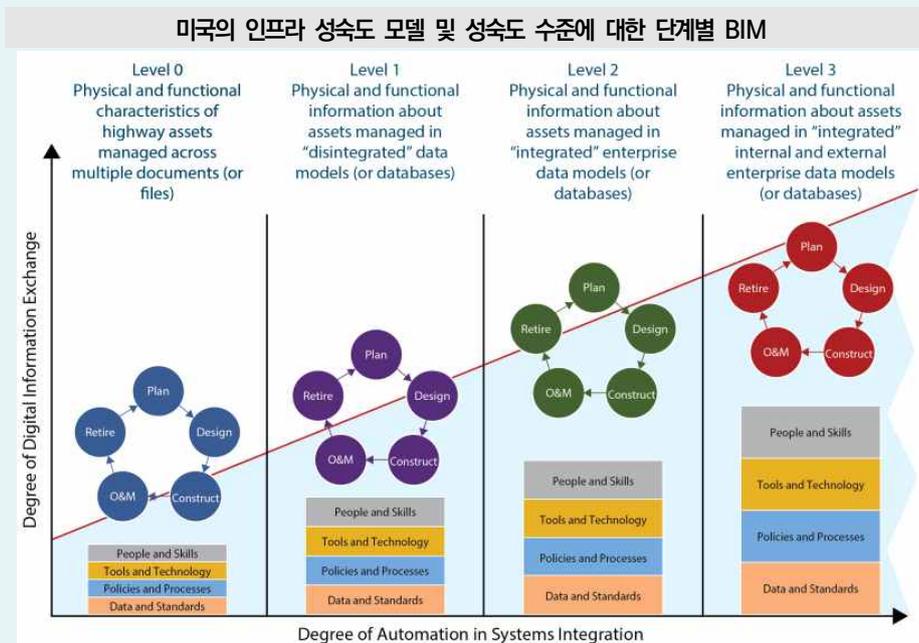
자료: 연방고속도로국(FHWA, 2023)

4. 미국과 한국의 건설사업 정보 디지털화에 대한 비교

◆ 미국은 인프라용 Advanced BIM을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건설 프로젝트 유형으로 확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건설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건설사업 정보 디지털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미국 Engineering News Record Smart Market Report(2012)에 따르면 미국은 2012년도에 이미 민간 건설시장에서의 BIM 활용도가 전체 공사의 70%를 넘어섰으며, 미국의 중대형 시공사는 90% 이상이 BIM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에서의 BIM 활용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진 BIM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음
- 미국의 인프라 자산에 대한 전사적 데이터 관리시스템의 통합 방법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식은 2021년에 수립한 미국의 인프라 자산에 대한 「Advanced BIM에 대한 국가적 전략 로드맵」에 명시되어 있으며, 미국의 ADCMS는 그 활동의 일환임

- ADCMS의 목표는 시스템, 제품, 도구, 애플리케이션 등의 상호 운용성을 극대화하고, 건설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선진 디지털 건설관리 시스템의 국가적인 운용을 정착시키는 것임
- 미국의 전자적 통합관리시스템의 성숙도 수준은 현재 BIM 성숙도 1단계(BIM 구현을 위한 개방형 표준 구축, 고부가가치 데이터 교환에 대한 시범운영,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계획 및 초기 시범 프로젝트 실행 등)이며, 2030년까지 BIM 성숙도 2단계(1단계에서 채택된 개방형 정보교환 표준에 기반한 데이터 교환 및 데이터 교환 자동화를 위한 표준 템플릿 개발)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각각의 개별 프로젝트에서 활용되고 있는 BIM을 연방고속도로국(FHWA)를 통해 미국 인프라투자법(IJA)을 기반으로 한 주 정부 주도의 BIM pooling 펀드를 설립하여 국가 차원의 인프라용 Advanced BIM으로 발전시키고 있음
- 미국과 한국의 건설사업 정보 디지털화의 차이점은 미국은 철저히 인프라투자 개념 하에 BIM 체계를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의 통합 건설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규 인프라 투자 및 기존 인프라의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생산성 향상에 목적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하에서 통합 건설관리시스템 개발 및 광범위한 개념의 건설사업 정보 디지털화 구축을 통해 민간에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미국과 한국의 건설사업 정보 디지털화 수준을 비교하면, 미국은 인프라용 Advanced BIM을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건설 프로젝트 유형과 BIM 사용 사례로 확장하는 단계인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건설 프로세스 단계를 아우르는 통합 건설사업 정보 디지털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시공단계에서 BIM을 도입하기 위해 몇몇 현장에 시범사업으로 적용하고 있는 단계임



* 자료: FHWA(2021), Advancing BIM for Infrastructure-National Strategic Roadmap

5. 시사점

- ◆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건설사업 정보 디지털화 수준은 초기 단계이며, 우선 전체 건설사업의 전체 생애주기를 One Code로 공유할 수 있는 통합 건설관리시스템 구축이 급선무임
 - 국내의 통합 건설관리시스템의 성숙도 수준은 대부분 개발사업에서 설계 단계에서만 BIM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획-설계-시공-운영 단계의 건설사업 프로세스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데이터 공유를 통한 전사적 건설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건설사업 정보 디지털화 수준은 초기 단계이며, 우선 건설사업 프로세스의 전체 생애주기인 기획-설계-시공-운영 단계를 One Code로 공유할 수 있는 통합 건설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임
 - 이를 통해 통합 건설관리시스템의 영향이 시공 전 프로젝트 개발 프로세스의 이해관계자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통합 건설관리시스템의 영향력을 직접시공의 전문건설사와 자산운용의 자산관리자 등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음
- ◆ 전문건설업의 건설사업 정보 디지털화에 대한 현장 적용 및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이 필요함
 - 다수의 영세기업이 분포되어 있는 전문건설업계의 경우, 현장에서 활용될 건설사업 정보의 디지털화에 대한 기술활용 및 연구개발의 비용상 문제로 인해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함
 - 설계부문과 전문건설업의 디지털 건설작업 및 원활한 디지털 정보 공유를 위해 미국의 사례와 같이 통합적 건설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보조금 지원정책이 필요함

정책동향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전문건설업체 보호 구간(4.3억원) 3년간 유예 -

홍성진 산업정책연구실장(hongsj@ricon.re.kr)

1.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경과

- ◆ 2018. 12. 31.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따라 도입된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는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였음
 -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는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에 비하여 금액 기준 공공공사 3.5배, 민간공사에서 15.7배로 나타나면서, 일방적인 전문건설업체의 피해로 작용
 -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는 상호시장의 공사를 수주한 업체와 기존 시장을 잠식당한 업체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영세 전문건설업체가 일방적으로 시장을 잠식당한 상황
- ◆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회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2023. 07. 03. 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3. 09. 04. 김희국 의원 대표발의)
 -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공동 TF를 구성하여 정부·국회에 대한 지속적인 입법 건의 및 관련 연구 수행
- ◆ 2023. 11. 22. 국회 교통위원회는 2건의 법안을 병합·심사하여 대안을 마련하였고, 2023. 12. 20. 제411회 본회의에서 대안에 대한 원안이 가결되었음

2.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내용

- ◆ 2024. 1. 1. 시행되는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사에정금액(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 포함)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진입 제한을 3년간 유예(2026년 12월 13일까지)
 - 2개 이상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공동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공사 컨소시엄 제도의 시행일을 3년 유예(2026년 12월 13일까지)

현행	개정안
<p>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단서 신설></p> <p>5. ~ 7.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다만, 공사에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p> <p>5. ~ 7.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부칙<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① ~ ② (생략)</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④ (생략)</p>	<p>부칙<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① ~ ② (생략)</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신설></p>	<p>부칙<법률 제19865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유효기간)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p>제3조(건설공사 시공자격의 적용례)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3. 시사점

- ◆ **우선,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영여건 악화를 최소화하고, 종합·전문건설사업자의 공정한 경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의결한 입법자의 결단을 높이 평가함**
 - 국토교통부 역시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인지하고, 건설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 및 국회의 입법 처리 과정에 기여
- ◆ **다음으로,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발주자는 공사에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 5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제8조 제4항)하는 등 전반적인 개정 필요
- ◆ **마지막으로, 향후에도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에 따른 시장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건설업계 및 연구기관의 협력이 필요함**

시장동향

건설기업 부실 우려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현황 점검

- 하도급업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 -

박선구 경제금융연구실장(parksungu@ricon.re.kr)

1. 건설기업 부실화 우려 점검

◆ 2023년 들어 건설기업 폐업과 부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임

- 2023년 종합건설기업 폐업 건수는 581건, 부도업체도 6개사로 이전에 비해 증가
- 2024년에는 건설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부동산 PF 위기 확대 가능성도 상존하여 건설기업 부실화 우려는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
- 건설업 생산구조의 특성상 종합건설업체 부실화는 하도급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자재, 장비업체와 근로자까지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상황

◆ 이 같은 연쇄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장치를 마련

- 법에서는 '공사 금액 1,000만원 이하', '발주자의 직접 지급' 등을 제외하면 지급보증이 의무

2.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현황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실적은 2020년 6.4조원에서 2022년에는 43.7조원으로 6.8배 급증함

- 이는 2020년 7월 8일 개정된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에게 적용되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가 폐지된 영향이 결정적
- 실제로 워크아웃으로 인해 우려가 큰 태영건설의 경우 1,096건의 하도급 계약 가운데 1,057건(96.4%)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가입되어 있거나 발주자 직불 합의인 것으로 조사
- 대한전문건설협회 조사(101개사 대상)에서는 92개사(91.1%)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수령
- 즉, 최근 들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전에 비해 종합건설업체 부실에 따른 하도급업체 보호가 비교적 두텁게 변화한 것으로 평가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실적 현황

(단위 : 억원)

상품	기관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합계	78,736.2	58,071.4	53,619.4	63,821.7	345,302.3	437,395.4
	건설공제조합	77,825.8	56,980.1	51,845.1	61,839.9	337,934.0	429,289.0
	전문건설공제조합	861.6	1,030.7	1,703.1	1,818.6	3,183.5	6,382.4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48.8	60.5	71.2	163.3	4,184.8	1,724.0

※ 자료: 각 공제조합 업무통계연보 각연도

◆ 2022년 기준 전문건설업 하도급계약 건수는 125,825건, 금액은 85.7조원이며, 이중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대상 공사는 건수로는 86.5%, 금액으로는 99.9%를 차지함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약 4개월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이라는 점과 보증시장에 서울보증보험과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등도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급 비율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여건

전문건설업 하도급공사 금액별 건수 및 계약금액 비중(2022년 기준)

하도급 금액	건수(건)	비중(%)	금액(백만원)	비중(%)
1,000만원 미만	16,948	13.5	77,636	0.1
1,000~5,000만원	31,262	24.8	848,666	1.0
5,000만원~1억원	16,641	13.2	1,211,142	1.4
1억원~3억원	25,701	20.4	4,590,116	5.4
3억원~5억원	9,453	7.5	3,666,301	4.3
5억원~10억원	10,270	8.2	7,299,933	8.5
10억원~20억원	7,210	5.7	10,137,067	11.8
20억원~30억원	2,901	2.3	7,087,555	8.3
30억원~50억원	2,369	1.9	9,145,142	10.7
50억원 이상	3,070	2.4	41,654,243	48.6
총 계	125,825	100.0	85,717,801	100.0

※ 자료: 대한전문건설협회 통계연보

3.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모니터링 강화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이전에 비해 크게 활성화되었다는 점은 긍정적

◆ 보증기관은 부실위험이 있는 기업에 대해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발급 여부를 재확인하고 모니터링 강화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수급사업자의 연쇄부도, 자금난, 부실공사 유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과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은 쌍무계약으로 동시이행 관계임을 인지하고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체크하는 등 위험관리를 철저히 대비



RICON
건설 BRIEF VOL 59

RICON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발행처 |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발행인 | 김희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13층(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TEL : 02-3284-2600 FAX : 02-3284-2620 www.ricon.re.kr